

#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21780 |
|----------|-------|

발의연월일 : 2026. 10. 2.

발 의 자 : 박주민 · 이주희 · 진성준  
채현일 · 노종면 · 허영  
이광재 · 최기상 · 주철현  
윤준병 · 조계원 · 김남국  
임미애 · 최민희 · 박지혜  
이광희 · 송재봉 · 모경중  
권향엽 · 김성범 · 김영배  
안도걸 · 오기형 · 임문영  
박상혁 · 이강일 의원  
(26인)

### 제안이유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의 발전을 통해 반도체와 에너지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한 경제성장 및 구조개편이 일어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사회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더욱 더 심화시키고 있음. 특히 초기 고용이 줄고 청년들의 사회 진출 출발시점이 점점 늦어지는 상황에서 자산의 유무가 청년층 전체의 자산격차의 심각한 불평등을 낳고 있음. 청년층의 자산 격차가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부동산 조기 진입, 고등기관으로의 진학 등 초기의 격차가 생애 전반에 걸쳐서 누적되기 때문임. 기존 청년 지원

정책의 대부분은 고용을 전제로 하거나 부채성 자금 지원 또는 한시적 소비지출 지원에 그치는 청년수당 등이어서 불평등 완화에 한계가 있음. 이미 현금지급성 사회보장을 자산기반형 복지로 전환해야한다는 논의는 국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채무에 대한 부담 없는 장기적 자본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본 법안은 법 통과 당시 17세,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국민에게 출생 시점부터 18세 전까지 국가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고, 이를 기금으로 통합 운용하여 사회 진출 시점에 고등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 역량 개발과 자산 형성에 필요한 자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적 연대상속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국민에게 청년기본자산계좌를 개설하고 18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 적립하여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으로 통합 관리·운용 후 청년기본자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함(안 제2조 및 제5조).

나.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에 기본계좌주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4조).

다. 저소득 기본계좌주가 추가 입금을 하는 경우 국가가 이에 상응하

는 금액을 추가 입금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라. 계좌에서의 인출은 18세 이후 고등교육, 주거, 창업 등 기본자산 용도로 제한하고, 인출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법률에 규정 함(안 제6조).

마. 계좌 개설 및 입출금 등 실무는 취급금융기관이, 인출 승인 및 환 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의 관리·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담당하도록 업무 수행 주체를 구분함(안 제5조, 제6조, 제9조 및 제 15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을 설치·관리·운용하되, 기금 운용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자산 종류별 시 장수익률 초과 수익 목표를 명시하고, 기금 운용 전담조직의 설치 근거를 둠(안 제9조).

사.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 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되, 기획예산처차관, 재정경제부차관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포함함(안 제10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서 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2조).

자. 기본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한 사람은 사용 결과를 기한 내에 신고 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용도 외 사용의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함(안 제15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에 진출하는 모든 청년에게 출발 시점에 고  
등교육, 주거, 창업 등 자본적 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하  
기 위한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부의 불평등 완화와  
공정한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이란 제5조에 따른 청년기본자산계좌를  
개설하고, 일정한 국민의 청년기본자산계좌에 대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입금하며, 계좌 잔액을 제8조에 따른 청년기본자산지원기  
금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청년기본자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  
다.
2. “청년기본자산”이란 제6조제1항에 따라 모든 청년에게 출발 시점  
에 고등교육, 주거, 창업 등 자본적 지출 용도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청년기본자산계좌”(이하 “기본계좌”라 한다)란 제5조에 따라 개  
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제3조(주관) 이 법에 따른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 제2장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

제4조(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심의위원회) ①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 제도 및 재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본계좌 인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이 경우 위원에는 기본계좌주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회에는 교육, 금융투자, 주택, 창업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한다.

제5조(청년기본자산계좌 개설 및 지원금 입금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각각의 기본계좌를 개설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좌가 개설된 국민(이하 “기본계좌주”라 한다)이 18세가 되기 전까지 해당 기본계좌에 매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입금한다.

1. 시행 첫 해: 20만원

2. 시행 첫 해 이후: 전년도의 지급 기준액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률을 곱한 금액

③ 기본계좌주 및 부모 등 보호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18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좌에 추가 입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좌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입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계좌에 추가로 입금할 수 있다.

④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운용 실적의 정산방법에 따라 매년 국민 각각의 기본계좌에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손실금을 차감한다.

⑤ 취급금융기관은 매년 각 기본계좌별 잔액, 연간 운용성과 등을 기본계좌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기본계좌의 개설방법·절차, 취급금융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범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입금절차 및 제5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본계좌에서의 인출 등) ① 기본계좌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본계좌의 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 다만, 18세 미만의 기본계좌주는 제1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이에 준하는 학비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3.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드는 비용(취득에 부수하는 조세 및 수수료를 포함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에 드는 자금
5. 그 밖에 기본계좌주의 인적·물적 자본 형성을 위한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5세 이상인 기본계좌주는 용도 제한 없이 기본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금 용도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본계좌주가 제1항에 따라 기본계좌의 자금을 인출하려는 경우에는 인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인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인출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취급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⑥ 취급금융기관은 제5항에 따른 승인 통지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의 종류·서식, 제출 방법 및 기한, 보관기간, 그 밖에 증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4항 및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제14조에 따라 행정정보 등을 확인하여 인출 사유 또는 자금의 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양도 및 담보 제공 금지 등) ① 제6조에 따라 기본계좌에서 자금을 인출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② 기본계좌주가 사망 또는 국적을 상실한 경우 해당 기본계좌를 폐쇄하고 잔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에 귀속한다. 다만, 제6조제4항에 따른 인출 신청에 대하여 공단의 승인이 있어 지급만 남은 상태에서 기본계좌주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하며, 상속인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용도 제한 없이 공단이 승인한 금액에 한정하여 자금을 인출 할 수 있으며 잔액은 모두 제8조에 따른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에 귀속한다.

### 제3장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

제8조(기금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좌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본계좌의 자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누적에 따른 적립금
3.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에 귀속되는 금액
4.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환수금
5.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중 그 설치 목적이 청년의 교육·주거·창업 지원 또는 자산형성 지원 등 이 기금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기금으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이 경우 전입의 요건·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좌 인출금의 지급

2.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제9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5.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에 위탁할 경우 그 수익률은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기금의 결산 결과 운용수익금이 발생한 때에는 그 수익금 중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조직 위탁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위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과 기획예산처차관, 재정경제부차관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포함해야 하며 기금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운용지침) ① 운용위원회는 기본계좌주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금운용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공사업에 사용할 기금 자산의 비율
2. 공공사업에 대한 기금 배분의 우선순위
3.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

② 기금운용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서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전년도 10월 말까지 국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에 예탁된 기금의 사용 내용을 각각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제4장 보칙

제13조(조사·질문 등) ① 공단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출자금용도의 확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좌주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정보의 이용) ① 공단은 국가기관, 지방자

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출자금 용도의 확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토지·건물·부동산등기·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학적 및 등록금 납입·사업자등록·국세 및 지방세 납부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5조(신고 및 환수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한 사람은 자금 사용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한 사람에게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단은 기본계좌의 자금을 인출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본자산을 지급받은 경

우

2. 인출한 자금을 제6조제1항 각 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 공단은 기본계좌의 자금을 인출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보완 또는 추가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청년기본자산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제5장 벌칙

제16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본자산을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을 같은 항 각 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질문에 대하여 거부

· 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금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출생한 기본계좌주에 대한 제5조제2항에 따른 입금은 이 법 시행일부터 18세가 되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한다.